

알아두면  
유익한 코너(12)



River & Culture



허철 | (주)도화엔지니어링  
수자원본부 부회장  
(hc5321@naver.com)

##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 시행 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대상 해당 여부

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07조 관련)

다음은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 제26조·제27조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」(총리령)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“농업생  
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 시행 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해당 여부”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(안건번호 2005-0071, 회신일 2005. 10. 21)  
을 현행 관계 법률의 조문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.

### ■ 질의요지

「하천법」에 의한 하천에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 
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「하천법」  
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  
는지 여부

### ■ 회답

「하천법」에 의한 하천에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 
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「하천법」  
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  
지 아니합니다.

### ■ 이유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·제5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의  
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농  
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하고, 동법

제107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  
어서는 「하천법」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  
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, 일정한 허가에 따른  
점용료 등의 징수는 국민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  
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인데, 「농어촌정비  
법」 제107조에서 「하천법」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  
료 등의 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뜻은 「하천  
법」의 점용료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 
「하천법」에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점용료 등을 면제한  
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에  
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  
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07조의 효력에 의하여 농어촌정비사업  
은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  
다. 🌐